

[별표 3] <개정 2005.8.5, 2006.8.4, 2007.2.1>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제18조제2항관련)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1.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 등과 관련된 시설 가. 임도 나.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관리사(주거용을 제외한다) 다. 임산물의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라. 임산물을 가공·건조·보관하기 위한 시설 마. 비료·농약·기계 등 임업용 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바. 운재로 및 작업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설계·시설기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운재로 및 작업로의 너비는 3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 및 차를 돌리기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로서 산불감시탑·방화선·간이무선통신시설·간이저수조·간이헬기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3.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산림공익시설,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전·관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	제한없음	(가)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산책로·탐방로·등산로의 너비는

설		2미터 이내일 것 (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전·관리시설은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제한없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학부 등이 설치된 학교가 임업시험연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5.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준보전산지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영위를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농림어업용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7. 법 제1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제한없음	평균 경사도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각각의 지역	제1호 내지 제7호의 설치조건 등 부지면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지면적 안에서 설치될 것
9. 가축의 방목	준보전산지	제12조제11항제6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일 것

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가. 산채·약초의 재배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특용작물·야생화의 재배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다만,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하지 아니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하는 경우로서 산나물류·약초류(「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나물류·약초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재배하려는 경우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익용산지의 경우 : 5만제곱미터 미만(약초류 중 장뇌를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미만) (2) 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경우 : 제한 없음
다. 관상수의 재배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12. 물건의 적치	준보전산지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 경우 당해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30년생 이상인 소나무의 비율은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		제12조제11항제9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가. 누에사육시설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다.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 1천제곱미터 미만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 1천제곱미터 미만 (3) 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인 경우 : 1천제곱미터 미만
라. 농막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일 것
마.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만한다)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일 것
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시설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채석이 제한되는 지역이 아닐 것

※ 비고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은 제1호·제5호·제6호·제9호·제11호·제12호 및 제13호 (라목 및 마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재배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제외한다.